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9. 19 선고 2023나741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 주식회사 A

피고, 항소인 1. B

2.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

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실

담당변호사 채희상

변 론 종 결 2023. 8. 22.

판 결 선 고 2023. 9. 19.

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1. 10. 선고 2022가단5213262 판결

주 문

1.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가.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① 피고 B와 주식회사 E 농업회사법인(이하 'E'라 한다) 사이에 2018. 2. 28. 체결된 매매예약, ② E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(이하 'C'이라 한다) 사이에 2018. 9. 10. 체결된 매매계약, ③ 피고 C와 D 주식회사(이하 'D'이라 한다) 사이에 2019. 1. 31.

체결된 신탁계약을 각 26,769,736원 및 그 중 19,955,841원에 대하여 2022. 7. 1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8.788%, 그 다음 날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들과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7,485,63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제외)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안승호, 판사 최복규, 판사 오연정

[별지]

부동산 목록

1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 대 1,845㎡
 2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 대 2,950㎡
 3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 도로 638㎡
 4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 임야 1,875㎡
 5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 대 3,031㎡
(위 1.에서 2019. 12. 24. 분할)
 6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 대 2,000㎡
(위 2.에서 2019. 12. 24. 분할)
 7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
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96㎡
 8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, [] 동 (건축물대장상 [])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
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6㎡
 9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, [] 동 (건축물대장상 [])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
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6㎡
 10.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, [] 동 (건축물대장상 [])
[도로명주소]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[]
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
제1종 근린생활시설 1층 196㎡
- (이상)

